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2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9.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9.2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

가. 제안이유

재능장학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
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장학사업 대상 확대 (안 제6조제1항제4호)

- 재능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단
기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장학생의 재능 발전과정을 확인하여
지역 인재로 육성

2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문구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재능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